2020년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사업 공모

‘2020년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Ⅰ 개요

1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국민 건강관리 향상 목적의 의료정보 관리체계 개선 및 적극적 의료데이터 활용 요구 증가**

  *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병 의심자의 의료데이터를** 보건당국에 **제공토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3월)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의 다양한 수요처가 발생하나, EMR 간 **상이한 데이터 구조로 인해 각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 낮음**

□ 필요성

- 現 의료기관 EMR 시스템은 **환자안전과 직결된 기능*이 미흡하며, EMR 인증제**의 인증기준에 따른 기능 개선 필요**

  * 잘못된 투여경로 알림, 약물 부작용 알림 등

  **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 및 진료연속성 확보를 위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시행('20.6월)

- '20년 2차년도 국가디지털 전환사업인「**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기준 표준 개발 및 확산 지원**」사업*(이하 '20년 EMR 표준개발 사업)의 **실증 체계 구축 필요**

  * EDI 코드 SNOMED CT 용어 매핑, 진료기록요약지 FHIR 리소스 전환 가이드 개발, 약물 CDS를 위한 약물목록 서브세트 개발 등

- 특히 자발적인 정보화 개선 여력이 부족한 **1, 2차 의료기관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EMR)의 제도 요구사항 반영, 의료데이터 표준화, 품질 관리 방안 등 실효적인 개선 대책 필요**

○ **(개선방향)**

- EMR 업체와 해당 EMR제품 도입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시스템 개선비용을 보조하고, 의료기관에 인증 EMR 제품을 확대·보급하여,

  ① 의원·병원·종합병원 대상으로 **EMR 인증제의 확산 및 임상의사 결정을 통한 환자안전 강화**

  ② 종합병원 대상으로 **국제표준에 기반한 의료데이터 생성 및 활용**

□ 기대효과

○ **(환자안전) 인증 EMR 제품의 확보**로 환자안전 및 진료연속성 제고를 위한 EMR 개선과 양질의 의료데이터 생산기반 마련

- 인증 EMR 제품을 의료기관에 **보편적 확산** 기반 마련하여, **EMR 인증제 조기 안착을 도모**

○ **(의료데이터 활용)** 인증 EMR 제품에서 **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산** 기반 마련

-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진료정보 수집 방법 실증**
- 의료기관 유형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의료데이터 활용사례 실증**

○ **(서비스 연계)** EMR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 및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서비스(CDS, PHR 등) 연계 운용 검증

- **'20년 EMR 표준개발 사업**의 산출물을 활용한 **실증 체계 구축**

2 공모 개요

□ 공모 일반사항

○ **(공모명)** ‘20년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사업 공모

* 이하 ‘표준화 사업’

○ **(목적)** ’20년 EMR 인증제*의 인증기준 구현·확산을 통한 고품질 의료데이터 생산 및 활용기반 마련으로 **상호운용성 확보 및 환자 안전 강화**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2호)

○ **(지원대상) EMR 업체*와**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 ’20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신청이 가능한 업체 및 의료기관

** (의원급 컨소시엄) EMR 업체와 의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병원급 컨소시엄) EMR 업체와 병원·종합병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종합병원급 컨소시엄) EMR 업체와 종합병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내용)** EMR 제품개선 및 인증획득, 현장활용 조건으로 **개발비(인건비) 보조**

○ **(신청방법) EMR 업체가 의료기관을 모집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사업제안서 등 신청서류 제출 … 신청양식은 별첨문서 참조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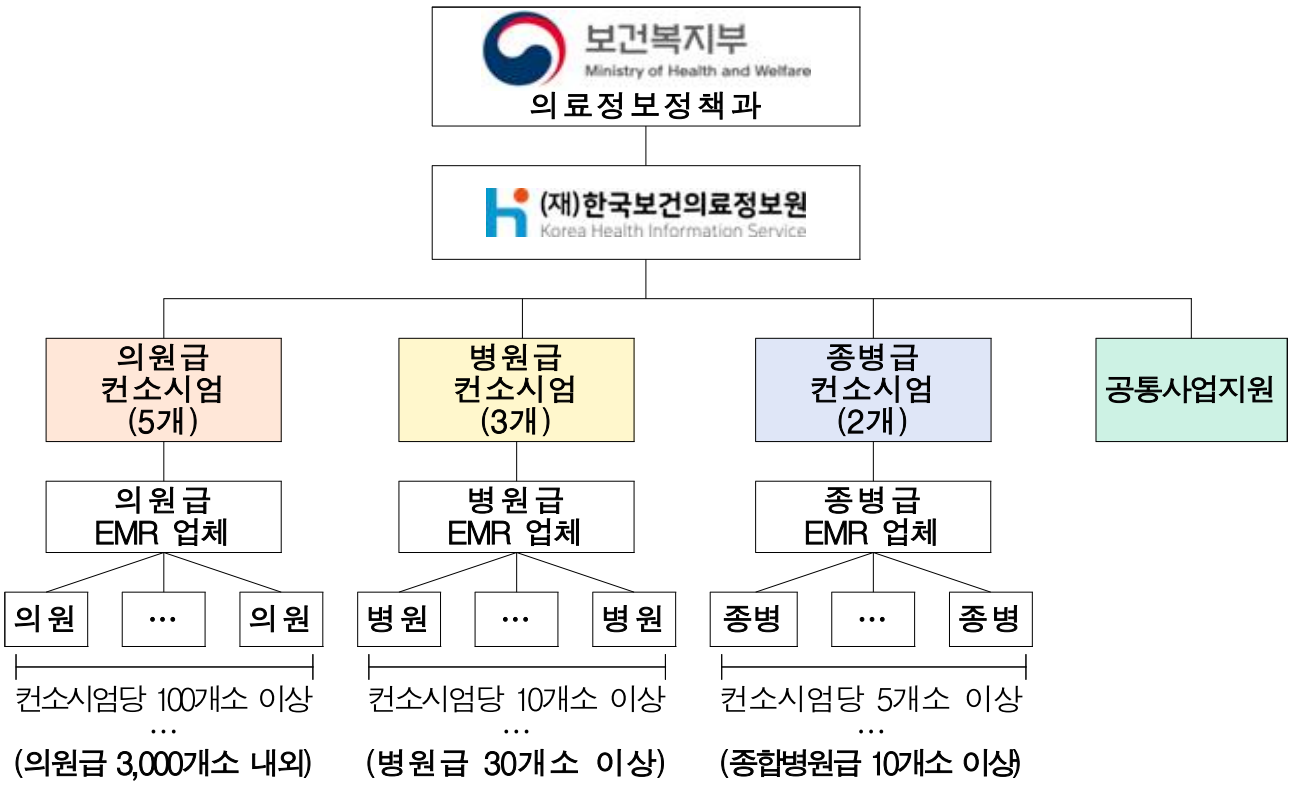
- 인증 EMR 제품의 개발 확대·보급… **의원급** **병원급** **종병급 대상**
-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의원급** **병원급** **종병급 대상**
- 환자 안전을 위한 약물 알레르기 임상의사결정지원 구현… **병원급** **종병급 대상**
-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종병급 대상**
- 참여 의료기관의 의료데이터 실증… **의원급** **병원급** **종병급 대상**

○ **(지원기간)** 컨소시엄 공모 선정 후 ~ **'21.4월**

○ **(지원예산) 총 5,140백만원**(컨소시엄 유형별 상이)

○ **(지원금 지급방안)** 컨소시엄 공모에 따른 사업계약 후 선금 및 중도금(70%), 잔금(30%) 집행 예정

○ **(추진체계)**



* 의원급 참여 의료기관 개소 수는 3,000개소를 목표로 하되, 컨소시엄 당 최소 100개소 이상 신청 (예산 한도 내에서 컨소시엄 별 참여 의료기관(의원) 수 조정 가능)

○ (추진일정)

업무단계	추진일정	주요내용
공모 공고	9.1~9.21	공고문 공고 등 공모 안내
신청서 접수	~9.21	공모 신청서류 접수
선정평가	9월 4주~9월 5주	평가회의 운영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조정	10월 1주	평가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및 예산 등 협의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10월 2주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	10월 2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수행기관간 계약 체결
착수보고	10월 중	사업 착수 보고회
1차 지원금 지급	10월 중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
월별보고서 제출	매월	사업기간 전체 매월의 말일까지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	'21년 1월 중	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2차 지원금 지급	1월 중	중간보고 검토 완료 후, 2차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4월 중	사업종료 전 제출
잔금 지급	4월 중	정산 후 잔액/불인정금액 제하고 잔금 지급

※ 상세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공모 추진내용

□ 컨소시엄 구성

○ **(의원급 컨소시엄)** 의원용 EMR 업체와 의원 참여 컨소시엄*(5개)

* **의원급 컨소시엄 : 1개 EMR 업체와 사업기간 내 EMR 확산 가능한 의원 100개소 이상**으로 구성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컨소시엄 별 참여 의원 개수는 조정 가능

○ **(병원급 컨소시엄)** 병원용 EMR 업체와 병원 참여 컨소시엄*(3개)

* **병원급 컨소시엄 : 1개 EMR 업체당 병원·종병 10개소 이상**으로 구성

※ 컨소시엄 내 유형3(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포함된 경우 유형3 인증 획득 필요

○ **(종병급 컨소시엄)** 종합병원용 EMR 업체와 종합병원 참여 컨소시엄*(2개)

* **종합병원급 컨소시엄 : 1개 EMR 업체당 종합병원 5개소 이상**으로 구성

○ (구성조건)

- **'20년 EMR 인증제에 참여 가능한 업체 및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과 복지부「'20년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지원사업,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인증 EMR 제품의 확산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본 사업 컨소시엄 구성 의료기관에서 제외

- 한 **컨소시엄당 단일 EMR 업체**로 구성

- 한 EMR 업체에서 최대 2개의 종별 컨소시엄 **중복 신청 가능***

* 단, 중복 신청 시 유형별 EMR 제품이 상이하여야 하며, 신청한 EMR 제품이 서로 상이한지 확인을 위하여 현장 실사 가능

* 신청서류 제출 및 향후 사업관리는 컨소시엄별 수행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본사업** 참여하여 제품 및 사용인증 획득한 기관 참여 가능

* 단, 시범사업에서 인증을 획득한 EMR 제품의 경우 본사업 인증기준으로 제품 개선 및 인증갱신 필수

** 본 사업에서 인증을 기 획득한 EMR 제품은 선택 인증기준 및 시범기준에 대한 추가 개선 진행계획 제시

□ 공모참여 일반사항

○ (선정규모)

- **(의원급 컨소시엄)** 5개 컨소시엄 선정
- **(병원급 컨소시엄)** 3개 컨소시엄 선정
- **(종합병원급 컨소시엄)** 2개 컨소시엄 선정

○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컨소시엄당)

번호	컨소시엄	EMR업체 지원금(최대)	의료기관 지원금	컨소시엄 수	총금액
1	의원급*	220	240 (40만원 x 600개소)	5	2,300
2	병원급	280	(최대) 100 (10백만원 x 10개소)	3	1,140
3	종합병원급	550	(최대) 300 (60백만원 x 5개소)	2	1,700
합 계					**5,140**

※ 의원급 컨소시엄 지원금 산정방식

(의원급 EMR업체 지원금) 600개소 미만으로 확산가능 의원 수를 제시한 경우, EMR 개선 지원금 조정 : 220백만원 x 확산 예정 의료기관 개소 수 ÷ 600(기준 개소 수)

* 단, 확산 예정의료기관 개소 수가 600을 초과하는 경우는 600으로 간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금) 600개소 기준과 상관없이 40만원 x 확산 예정 의원 개소 수로 산정

* 예산 한도 내에서 컨소시엄 별 참여 의료기관(의원) 수 조정 가능

○ (신청조건)

- EMR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보하여 참여
- 각 컨소시엄 유형별 **참여 의료기관 수 최소기준 충족 필수**

컨소시엄 유형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컨소시엄 당 참여 의료기관 수	100개소 이상	10개소 이상	5개소 이상

□ 기타 행정사항

○ **(사업관리)**

- **(회계정산)**

· 각 컨소시엄은 사업비의 일부(금액 별도 공지)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정산 용역비로 산정 필요*

*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지출계획 및 지출내역 점검 등 회계정산 실시

·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대해 회계법인에 제출·검토

- **(품질관리)**

· EMR 개선에 따른 시스템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는 EMR 제품인증 및 사용인증 수검으로 진행

○ **(사업비 집행)** 사업참여 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집행 내역, 증빙서류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

○ **(인건비)** … EMR 제품 1개, 컨소시엄당 최소 확산 의료기관 수 기준

- **(의원급 컨소시엄*)** 6명 및 27M/M 이상 인건비 사용

* 의원 600개소 구성 시 기준

- **(병원급 컨소시엄)** 5명 및 22M/M 이상 인건비 사용
- **(종합병원급 컨소시엄)** 11명 및 40M/M 이상 인건비 사용

※ 의료기관 확산(제품 설치, 교육 등)을 위한 인건비 포함

※ 본 사업 계약 후 신규인력 채용(1개월 이상 유지) 예정 시 가점 부여

※ 사업완료 시점에 인건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검수 예정

○ **(지출범위)** 최초 신청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서상 지출계획을 명시**, 모든 지출은 **동 사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만을 인정**

- 지출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에 해당 변경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 이후 원인 행위를 진행 필요

○ **(제한사항)** 집행 불가 비목 … [붙임] '상세 비목별 편성 기준' 참조

- 자산취득비(사업에 필요한 전산 장비 등 구입비)

○ **(검사·검수)**

- **(검수시점)** '21. 4~5월 중
- **(검수지표)** 아래 검수 지표에 대한 검사, 검수 및 잔금(30%) 지급

①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 완료 여부

② 참여 의료기관의 실증 의료데이터 생성 여부

□ 협조 의무사항

○ **(자료협력)**

- 감염병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생성된 의료데이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1항2호에 의거하여 보건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진료기록부(진료기록요약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본 사업의 성과분석을 목적으로 필요 시 의료기관 실증용 생성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여야 함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수검환경 구성)** 제품인증 및 사용인증 획득 조건에 따른 사업기간 및 '21년 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 및 환경 구성

※ 의원급 컨소시엄의 경우, 심사환경(의료기관 원격, 심사실 등) 준비

※ 사업기간 내 제품인증 및 사용인증 신청 자료 준비

Ⅲ 세부 사업내용

□ 추진목표

목표

EMR 표준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 질 향상

추진 내용

1. 인증 EMR 제품의 개발 확대 · 보급
2.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3. 환자 안전을 위한 약물 알레르기 임상의사결정지원 구현
4.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확보

기대 효과

EMR 인증제 확산을 통한 환자안전 강화	표준 임상데이터 생성을 통한 상호운용성 향상
❖ 감염병 환자 관리기능 강화	❖ CRS 기반 공통 임상문서 생성
❖ 임상의사결정지원(CDS) 연계	❖ FHIR 기반 의료데이터 생성

추진세부사항

1-1 EMR시스템 필수 인증기준 기능 구현

1-2 제품인증 및 의료기관 사용인증 확대

2-1 감염병 발생 신고서 신고기능 고도화

2-2 감염병 의심자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기능 구현

3-1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정보 기록 기능 구현

3-2 항생제 알레르기 관련 임상의사결정지원

4-1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활용 기반 마련

4-2 FHIR 리소스 형태 의료데이터 저장 · 조회 구현

1 인증 EMR 제품의 개발 확대 · 보급 ... 의원급 병원급 종병급 대상

병·의원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EMR 제품 생산 및 사용을 유도하여 환자안전 기능 강화 및 국가적 차원의 의료데이터 품질 향상 기반 마련

○ **(인증기준 구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기능 구현

- 의원급(유형1) 필수 인증기능 : 기능성 31개, 보안성 14개
- 병원급(유형2) 필수 인증기능 : 기능성 43개, 보안성 14개
- 종합병원급(유형3) 필수 인증기능 : 기능성 52개, 보안성 14개

* 세부 인증기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포털(emrcert.mohw.go.kr) 또는 [붙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참고

○ **(EMR시스템 인증)**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인증)**
  · **(全 컨소시엄)** '20년 내 제품인증을 위한 필수 인증기준 구현 및 인증신청 완료

※ 인증신청에 따른 인증심사 실시 예정이며, 제품인증 미 충족시 해당 업체 제품은 ~'22년까지(1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신청 불가 조건

- **(의료기관 사용인증)**
  · **(의원급 컨소시엄)**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은 사업기간 내 사용인증 신청 조건

※ 의원급 컨소시엄은 사용인증 신청 건수로 의료기관 확산 비용 정산 예정

  · **(병원·종합병원급 컨소시엄)**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의 '21년 내 사용인증 신청 조건

※ 인증 신청조건 미충족 시 해당 의료기관은 ~'22년까지(1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신청 불가

※ 단,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의 EMR 시스템이, 별도 제품인증 대상인 경우(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품인증 포함하여 사용인증 진행

②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 의원급 병원급 종병급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확한 신고 및 환자 진료기록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EMR시스템의 기능 강화

*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참조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신고기능 고도화**

-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발생신고 시 EMR시스템과 감염병자동신고 지원시스템간 프로그램(API) 연계 구현

※ 인증기준 F056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입력' 관련

○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의 진료기록요약지**(CRS, Care Record Summary) **생성 기능 구현**

-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에 준하여 **감염병 의심자의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 **및 생성된 CRS 모니터링** *** **기능 구현**

*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 1. 1.)

** 데이터 저장 방식(아키텍처) 및 활용(공공보고, PHR, 진료정보교류 등) 가능한 최적의 형태를 사업제안서에 제시 및 구현

*** 정합성 검증, 목록화, 내용 조회(뷰어), 건수 확인 등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실증(병원급, 종합병원급 컨소시엄) 진행

※ 인증기준 F058 '감염병 의심정보 생성·조회' 관련

- **(생성시점)**

①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의료진이 CRS 생성하는 기능 구현

② **(자동생성)** 진료내역, 수진기간을 설정하여 일괄적 CRS 자동 생성(Batch)하는 기능 구현

※ 공모 시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기능 및 시점을 제안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가족력 기록·수정·조회' 구조화 형태 구현**

- 가족력 기록 시 SNOMED CT 등 **구조화된 정형(Code化) 데이터**로 기록하여, 향후 임상데이터 연구 등 데이터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

※ 인증기준 F043 '가족력 기록·수정·조회' 관련

※ '20년 EMR 표준개발 사업 산출물에서 관련 Value Set(데이터집합) 제공 예정

3 환자 안전을 위한 약물 알레르기 임상의사결정지원 구현 … 병원급 종병급 대상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환자별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EMR에 입력하고, 의사 처방 시 알레르기 유발 약품의 처방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 마련

(구현 Use Case) EMR에 '약물 알레르기' 정보가 등록된 환자에게 의사가 약품(항생제) 처방 시, 임상의사결정지원*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하는 약품과 처방 약품 간 동일약품 여부 및 성분/성분군 유사성을 확인하여 진료의에게 경고

* 임상의사결정지원(CDS) : 의료진에게 진단, 치료 및 처방 등 의사 결정을 보조하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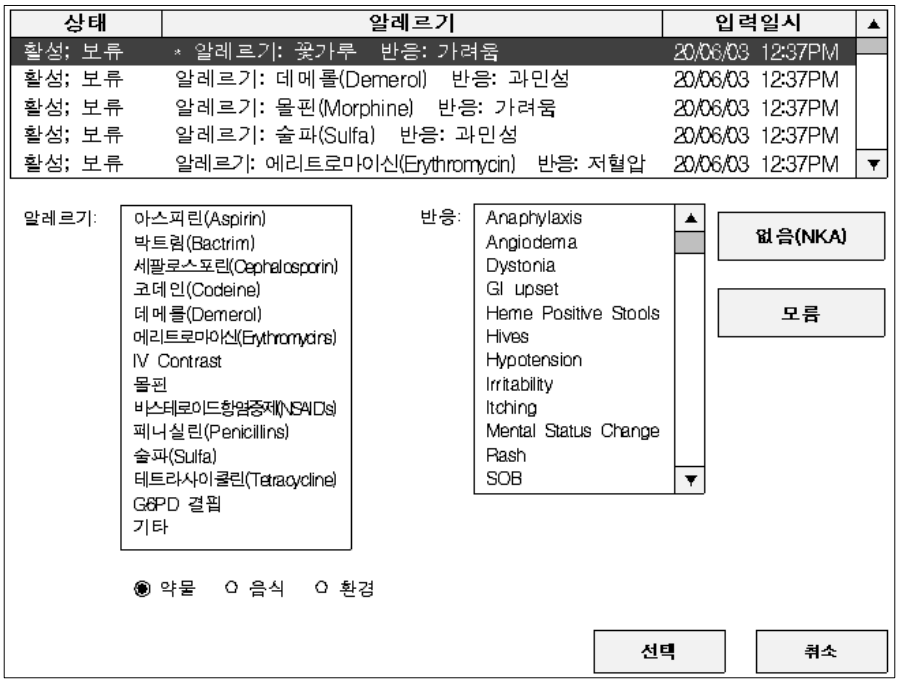
○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정보' 기록 및 경고 기능 구현

-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정보를 EMR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구현

※ 인증기준 F047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정보 기록·수정·조회' 관련

※ '20년 EMR 표준개발 사업 산출물에서 관련 Value Set(데이터집합), 기록 화면 예시 제공 예정

< 약물 알레르기 예시 화면 >



- **기록된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활용**하여 약물 처방 시 **약물 알레르기 경고** 기능 구현

※ 인증기준 F025 '약물 상호작용 및 약물 알레르기 점검·경고' 시범 관련

※ 병원급 컨소시엄 아래 중 택1, 종합병원급 컨소시엄 모두 구현

①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정보'에 기록된 약물을 처방 시, 해당 약물-알레르기 점검 및 경고 제공 구현

② 약물(항생제) 처방 시 **임상의사결정지원(CDS) 서비스** 적용*을 통해 **약물 알레르기 경고** 기능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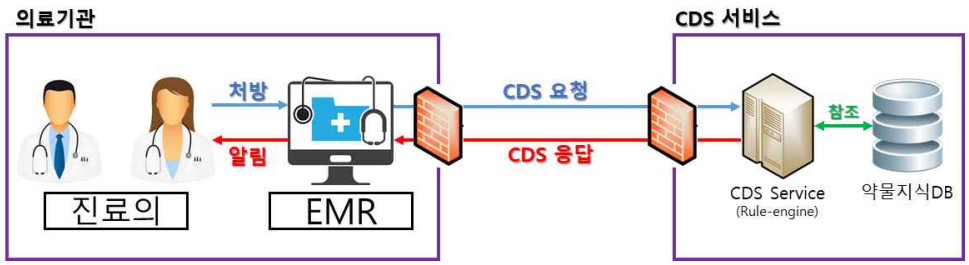
* 약물 알레르기 입력 및 식별을 위해 EMR의 약물명과 IDMP코드 매핑 필요 (IDMP : 의약품 식별 표준용어체계, Identification of Medicinal Product)

** 약물 지식 DB 등 CDS 서비스 가이드를 '20년 EMR 표준개발 사업 산출물을 통해 개발 예정이며, 본 사업 참여 컨소시엄은 의료기관의 처방화면에 CDS 표준 및 알람 제공 처리 기능 구현

- CDS 서비스 연계에 따른 **로그*** **생성 기능 구현**

* 처방의, 처방일시, 연계일시, 처방정보, 점검정보, 처방유지여부, 서비스 미사용 등

< 약물 CDS 시스템 구성도 >



※ 참여 컨소시엄 의료기관에 CDS 서비스 적용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제시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공통지원 사업을 통한 구축 지원 예정

4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 종병급 대상

의료기관의 EMR에서 국제표준(HL7 FHIR)에 기반한 공통적 데이터 모델로 의료 데이터를 추출하고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

(구현 Use case)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환자의 임상정보가 담긴 진료요약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참조

FHIR란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HL7)

○ 다양한 독립적으로 생성된 임상데이터 교환을 위해 데이터 형태, 표현 방법,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정의한 것

○ 웹 기반 기술로 사용 환경이 편리하고, 데이터 표현을 위한 JSON, XML 등 최신 웹 기반 API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현이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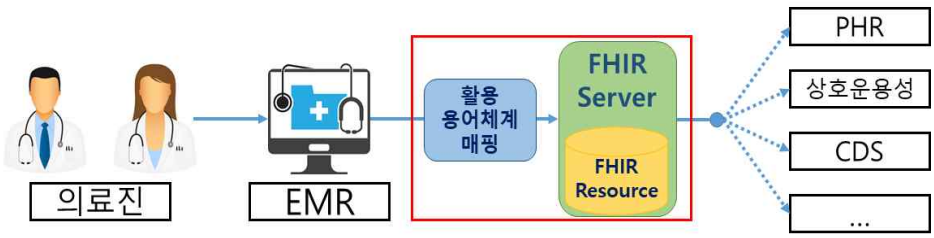
○ 의료데이터를 **공통 데이터 모델(FHIR)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공통 데이터 모델)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 구조를 활용**하며, 의료기관에서 데이터 활용 **가능하도록 FHIR 서버 구축**

* FHIR 리소스 : 공통 데이터 모델의 필요한 내용, 데이터 형태, 표현 방법 등을 정의한 데이터 형태

※ 서버 등 본 사업에서 자산취득비(사업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 구입비)는 집행 불가하며, 필요 시 컨소시엄에서 자체 조달하여야 함

<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활용 구조 >



- EMR 內 의료데이터(환자정보, 가족력, 흡연력, 진료기록요약지 항목 등)를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형태로 저장* 및 모니터링**하는 **기능 구현**

* 데이터 저장 방식(아키텍처) 및 활용(공공보고, PHR, 진료정보교류 등) 가능한 최적의 형태를 사업제안서에 제시 및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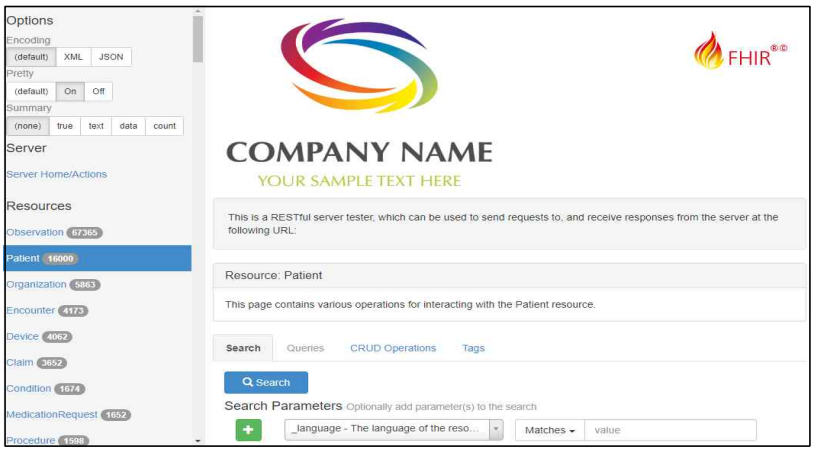
** 정합성 검증, 목록화, 내용 조회(뷰어), 건수 확인 등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된 웹 또는 앱(App.) 등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실증 진행

※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Local EMR시스템의 Code와 표준 Code 매핑작업 또는 EMR 내 표준 Code로 데이터 생성 포함

※ '20년 EMR 표준개발 사업 산출물을 활용하여 구축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공통지원 사업을 통한 구축 지원 예정

<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모니터링 기능 예시 >



※ http://fhir.hl7fundamentals.org 참조

- 저장된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를 환자별로 조회 기능 구현

※ 향후 PHR(개인건강기록) 등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

※ 공모 시 환자별 FHIR 리소스 조회 기능 제안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현

< 환자별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조회 기능 예시 >



- **(생성시점)** 특정환자 진료내역과 수진기간을 설정하여 **선택적 생성 및 일괄적 자동생성**(Batch) **기능** 구현

※ 공모 시 FHIR 리소스 데이터 생성 기능 및 시점을 제안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표준 정합성 검증된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진료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생성된 의료데이터 제공 기반 마련

5 (참여 의료기관) 의료데이터 실증

○ **(진료기록요약지, CRS)**… 의원급 병원급 종병급 대상

- **(생성)** 구현된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제시한 데이터 생성 목표치 이상 달성

- **(생성 목표)**

① **(컨소시엄 공통)**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진료기록요약지 요청 시 생성 가능하여야 함

② **(병원·종병급 컨소시엄)** 사업기간 중 컨소시엄 내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목표치* 이상 생성

(병원급 산식) 의료기관당 950건(매달) x 3개월 x 10개 의료기관 = 28,500건

(종병급 산식) 의료기관당 2,450건(매달) x 3개월 x 5개 의료기관 = 36,750건

* 병원급 컨소시엄 : 28,500건 이상, 종병급 컨소시엄 : 36,750건 이상

… [붙임] 산출 내역 참고

※ 생성목표 건수 대비 10%이상의 환자 수를 대상으로 CRS 생성 필수

예) 40,000건 CRS 생성 목표 시, 4,000명 이상의 환자 대상으로 생성

※ 제시된 목표치는 최소사항이며,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실증 목표, 시나리오, 생성 시점을 컨소시엄이 정하여 제시

(시나리오 예시) 내과계 외래 및 입원환자 대상으로 5개 의료기관에서 매달 2,500건 이상 3개월간 생성하여 사업기간 중 총 37,500건 이상 생성 목표 등

※ 생성된 진료기록요약지는 본 사업 성과분석 시 활용 가능

○ **(임상의사결정지원, CDS)**… 병원급 종병급 대상

- **(생성)** 환자안전 관련하여 EMR에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정보 생성 기능을 활용

- **(CDS 연계)** 알레르기 데이터 입력된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 시 약물 CDS 연계 및 경고(Alert) 정보 활용

※ 의료기관에 임상의사결정지원(CRS) 서비스 적용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제시

○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관리)**… 종병급 대상

- **(생성)** 구현된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생성 기능을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제시한 데이터 생성 목표치 이상 생성 달성

(시나리오 예시) 내과계 외래 및 입원환자 대상으로 5개 의료기관에서 매달 2,500건씩 3개월간 생성하여 사업기간 중 총 37,500건 이상 생성 목표 등

- 데이터 매핑 정확성, 내용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컨소시엄 내 EMR 개선 협의체* 구성

* 컨소시엄 내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제시

- 구현된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모니터링 웹, 앱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 생성 실증

- **(생성 목표)**

①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요청 시 생성

② 사업기간 중 컨소시엄 내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생성 목표치* 이상 생성**

(산식) 의료기관당 2,450건(매달) x 3개월 x 5개 의료기관 = 36,750건

※ 생성목표 건수 대비 10%이상의 환자 수를 대상으로 CRS 생성 필수

예) 40,000건 CRS 생성 목표 시, 4,000명 이상의 환자 대상으로 생성

※ 제시된 목표치는 최소사항이며,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실증 목표 및 생성 시점을 컨소시엄이 정하여 제시

※ 생성된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리소스)는 본 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활용 가능

○ **(복지부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원급 병원급 종병급 대상

-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이 복지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 사업 사업기간 내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신청 필수

※ 단, 의원급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은 권고 사항임

Ⅳ 공모 신청

□ 모집공고

○ **(공모명)**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사업 공모

○ **(모집공고)**

- **(공고기간)** ‘20.9.1.(화) ~ 9.21.(월)
- **(공고방법)**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관리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신청양식은 별첨문서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공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서식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서식2] 컨소시엄 구성 의료기관 참여 동의서 1부
- [서식3] 협조사항 이행 확약서 1부
- [서식4] 참여 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5] 사업제안서 1부
-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적합성 검증 결과 공문 사본(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
- EMR 인증제 기능성 필수기준 자가점검 증빙자료
- 사업수행 일정관리(WBS) 자료

○ **(제출방법)**

- 공문, 제출서류 파일은 PDF 파일로 변환·압축하여 1개 파일로 이메일(emrstandard@k-his.or.kr)로 제출

  * 최종 선정기관은 추후 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원본 일체를 필수 제출

○ **(제출마감)** ‘20. 9. 21.(월) 17:00 (e·mail 수신시간 기준)

* 제출 마감일 18:00까지 각 제출자에게 제출서류 접수증을 e·mail로 송부 예정 (미수신 시 유선으로 필히 확인)

Ⅴ 선정방안

□ 공통사항

○ 공모에 지원하는 유형별 컨소시엄 수가 선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실시 가능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및 현장실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 작성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해지하며, 해당 건의 사업비를 미지급함

□ 선정평가 기준

1 의원급 컨소시엄 선정평가

○ **(평가기준)** 정량평가 70%(평가지표) 및 정성평가 30%(사업제안서 평가)의 합산점수(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컨소시엄 순으로 예산 한도 내 선정

○ **(평가 실시방안)**

① **(정량평가)** 공모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통해 평가

② **(정성평가)** 컨소시엄이 제출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

※ 정성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처리방안)**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량평가 순위가 높은 분야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1단계, 정량평가)** 아래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정량평가 실시

<table>
<tr><th>순위</th><th>분야</th><th>배점</th><th>평가항목</th></tr>
<tr><td>1</td><td>확산 가능
의료기관 개소 수</td><td>40</td><td>· 확산 가능한 의료기관 개소 수 순위별 점수 부여
<table>
<tr><th>항목
(컨소시엄 순위)</th><th>점수</th></tr>
<tr><td>1위</td><td>40</td></tr>
<tr><td colspan="2">…
(순위별 4점씩 차등)</td></tr>
<tr><td>10위</td><td>4</td></tr>
</table>
※ 사업제안서 내 구체적인 확산 계획*, 근거, 목표, 목표 미달 시 조치 방안 등 제시
* (확산 계획 예시1) 참여 의료기관에 서명이 포함된 참여 동의서 제출
(확산 계획 예시2) EMR 일괄 배포 및 전자서명 프로모션 진행</td></tr>
<tr><td>2</td><td>EMR 제품
기능 수준</td><td>20</td><td>· EMR 제품의 인증제 기능성 필수기준(31개) 대상 기능 충족도에 따라 점수 부여
<table>
<tr><th>항목</th><th>점수</th></tr>
<tr><td>19개(60%) 이상 충족</td><td>20</td></tr>
<tr><td>18개</td><td>18</td></tr>
<tr><td colspan="2">…
(인증기준 1개당 2점씩 차등)</td></tr>
<tr><td>10개</td><td>2</td></tr>
<tr><td>9개 이하</td><td>0</td></tr>
</table>
※ 제안 EMR제품의 인증제 필수기준의 자가점검 증빙자료 제출 필수</td></tr>
</table>

<table>
<tr><th>순위</th><th>분야</th><th>배점</th><th>평가항목</th></tr>
<tr><td>3</td><td>EMR 제품
확산 용이성</td><td>20</td><td>· 인증 EMR 제품 확산 가능 의료기관 개소 수 순위별 점수 부여
<table><tr><th>항목
(컨소시엄 순위)</th><th>점수</th></tr><tr><td>1위</td><td>20</td></tr><tr><td colspan="2">…
(순위별 2점씩 차등)</td></tr><tr><td>10위</td><td>2</td></tr></table>※ 청구소프트웨어 인증 제품 목록으로 발주기관에서 판단</td></tr>
<tr><td>4</td><td>신규인력 채용
계획</td><td>15</td><td>· 본 사업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 예정인 인원 수
<table><tr><th>항목</th><th>점수</th></tr><tr><td>3명 이상</td><td>15</td></tr><tr><td>2명</td><td>10</td></tr><tr><td>1명</td><td>5</td></tr></table>※ 사업제안서 내 구체적인 채용 계획, 시점, 목표, 목표 미달 시 조치 방안 등 제시
※ 본 사업 계약 후 채용 기준</td></tr>
<tr><td>5</td><td>진료정보교류 참여
EMR 제품 여부</td><td>5</td><td>·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EMR 제품 여부
<table><tr><th>항목</th><th>점수</th></tr><tr><td>참여중</td><td>5</td></tr><tr><td>미참여</td><td>0</td></tr></table>※ 사업 참여 EMR 제품명이 포함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적합성 검증 결과 공문 제출</td></tr>
<tr><td colspan="2">합계</td><td>100</td><td>종합평가점수(70) : 합계 x 70%(평가지표 비율)</td></tr>
</table>

※ 순위 항목은 동일 순위 시 같은 점수 부여하고, 다음 순위는 동일 순위 수만큼 건너뛰고 점수 부여

○ **(2단계, 정성평가)** 사업제안서를 활용하여 정성평가 실시

※ 단, 컨소시엄의 정성평가 획득점수(30점 만점)가, 100점 환산하여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선정

- **(제안발표)** 사업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로 실시

- **(참석자)** 제안사별 사업설명 발표자* 외에 3인 이내 배석 가능

* 참여 컨소시엄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

- **(정성평가 항목)**

평가 부문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부문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일반 부분 (20)	사업 참여 개요 (10)	· 참여 동기 및 배경 · 사업 참여 목적
	사업 이해도 (10)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 · 사업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사업 수행 부분 (60)	사업 추진 전략 (25)	· 사업 추진 전략(제품 소개를 통한 추진 전략 등) · 사업 예산집행 계획 ·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의료기관 확산 계획 (25)	· 의료기관에 인증 EMR 제품 확산 계획 · 전자서명 보급·확산 전략 및 계획
	신규 인력 채용 (10)	·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 · 채용 계획 미달 시 조치 방안
기타 부분 (20)	추가 제안 (10)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추가 진행 계획 제안 등 ·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기타 사항 (10)	· 참여 EMR 제품의 EMR 인증제 인증획득 · '21년 내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 사용인증 수검 준비 및 환경 구성 계획 · 우리원 발전방안 등 의견 제시 · 위 사항들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
합계	**100**	**종합평가점수(30) : 합계 x 30%(사업제안서 평가 비율)**

○ (3단계, 사업계획·사업비 심의 조정)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 선정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협의 후 사업수행 계획을 확정

- 공고문 상의 협조의무 등 지원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예비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컨소시엄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컨소시엄과 과제조정을 진행함

○ **(4단계, 계약체결 및 사업지원금 지급)**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선정된 컨소시엄은 당초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계약체결)**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컨소시엄 대표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 **(사업지원금 신청)** 사업지원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회 분할 신청 및 지급

  ※ 선금 및 중도금(70%), 완료보고서 제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잔금(30%) 지급 예정

2 병원급 컨소시엄 선정평가

○ **(평가기준)** 정량평가 60%(평가지표) 및 정성평가 40%(사업제안서 평가)의 합산점수(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컨소시엄 순으로 예산 한도 내 선정

○ **(평가 실시방안)**

○ **(평가 실시방안)**

① **(정량평가)** 공모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통해 평가

② **(정성평가)** 컨소시엄이 제출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

※ 정성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처리방안)**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량평가 순위가 높은 분야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1단계, 정량평가)** 아래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1단계 정량평가 실시하여, 공모선정 목표 2배수 내로 2단계 정성평가 대상 선정

<table>
<tr><th>순위</th><th>분야</th><th>배점</th><th>평가항목</th></tr>
<tr><td>1</td><td>EMR 제품
기능 수준</td><td>30</td><td>· EMR 제품의 인증제 기능성 필수기준(43개) 대상 기능 충족도에 따라 점수 부여
<table>
<tr><th>항목</th><th>점수</th></tr>
<tr><td>26개(60%) 이상 충족</td><td>30</td></tr>
<tr><td>25개</td><td>28</td></tr>
<tr><td colspan="2">…
(인증기준 1개당 2점씩 차등)</td></tr>
<tr><td>12개</td><td>2</td></tr>
<tr><td>11개 이하</td><td>0</td></tr>
</table>
※ 제안 EMR제품의 인증제 필수기준의 자가점검 증빙자료 제출 필수</td></tr>
<tr><td>2</td><td>진료기록요약지(CRS)
생성 목표</td><td>30</td><td>· 컨소시엄 내 진료기록요약지 기본 목표 대비 추가 생성 비율</td></tr>
</table>

<table>
<tr><th>순위</th><th>분야</th><th>배점</th><th>평가항목</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h>추가 생성 비율</th><th>점수</th></tr>
<tr><td>50%초과</td><td>30</td></tr>
<tr><td>40%초과 ~ 50%이하</td><td>25</td></tr>
<tr><td>30%초과 ~ 40%이하</td><td>20</td></tr>
<tr><td>20%초과 ~ 30%이하</td><td>15</td></tr>
<tr><td>10%초과 ~ 20%이하</td><td>10</td></tr>
<tr><td>10%이하</td><td>5</td></tr>
</table>
※ 사업제안서 내 구체적인 생성 계획, 시나리오, 시점, 목표, 목표 미달 시 조치 방안 등 제시
※ 기본 목표 : 28,500건 이상
</td></tr>
<tr><td>3</td><td>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 개소 수</td><td>20</td><td>· 컨소시엄 참여 병원·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개소 수
<table>
<tr><th>항목</th><th>점수</th></tr>
<tr><td>15개소</td><td>20</td></tr>
<tr><td>14개소</td><td>17</td></tr>
<tr><td colspan="2">…
(1개소마다 3점씩 차등)</td></tr>
<tr><td>11개소</td><td>8</td></tr>
<tr><td>10개소</td><td>5</td></tr>
</table>
※ 사업제안서 내 구체적인 확산 계획*, 목표, 목표 미달 시 조치 방안 등 제시
* (확산 계획 예시) 참여 의료기관에 서명이 포함된 참여 동의서 제출 등</td></tr>
<tr><td>4</td><td>신규인력 채용
계획</td><td>10</td><td>· 본 사업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 예정인 인원 수
<table>
<tr><th>항목</th><th>점수</th></tr>
<tr><td>3명 이상</td><td>10</td></tr>
<tr><td>2명</td><td>6</td></tr>
<tr><td>1명</td><td>3</td></tr>
</table>
※ 사업제안서 내 구체적인 채용 계획, 시점, 목표, 목표 미달 시 조치 방안 등 제시
※ 본 사업 계약 후 채용 기준</td></tr>
<tr><td>5</td><td>진료정보교류 참여
EMR 제품 여부</td><td>10</td><td>· 컨소시엄 내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 개소 수
<table>
<tr><th>항목</th><th>점수</th></tr>
<tr><td>10개소 이상</td><td>10</td></tr>
<tr><td>9개소</td><td>9</td></tr>
<tr><td colspan="2">…
(1개소마다 1점씩 차등)</td></tr>
<tr><td>2개소</td><td>2</td></tr>
<tr><td>1개소</td><td>1</td></tr>
</table>
※ 컨소시엄 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동일 EMR 제품명이 포함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적합성 검증 결과 공문 제출</td></tr>
<tr><td colspan="2">합계</td><td>100</td><td>종합평가점수(60) : 합계 x 60%(평가지표 비율)</td></tr>
</table>

※ 순위 항목은 동일 순위 시 같은 점수 부여하고, 다음 순위는 동일 순위 수 만큼 건너뛰고 점수 부여

○ **(2단계, 정성평가)** 사업제안서를 활용하여 정성평가 실시

- **(제안발표)** 사업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로 실시

- **(참석자)** 제안사별 사업설명 발표자* 외에 3인 이내 배석 가능

  * 참여 컨소시엄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

- **(정성평가 항목)**

평가 부문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일반 부분 (20)	사업 참여 개요 (10)	· 참여 동기 및 배경 · 사업 참여 목적 · 컨소시엄 소개, 구성, 특징 및 장점
	사업 이해도 (10)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 · 사업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사업 수행 부분 (60)	사업 추진 전략 (25)	· 사업 추진 전략 · 사업 예산집행 계획 ·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의료기관 확산 계획 (10)	· 컨소시엄 구성 의료기관에 인증 EMR 제품 확산 계획
	진료기록요약지(CRS) 생성 계획 (15)	· 진료기록요약지(CRS) 생성 목표, 전략, 시점 등 계획의 적합성 ※ 기본 목표 : 28,500건 이상
	신규 인력 채용 (10)	·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 · 채용 계획 미달 시 조치 방안
기타 부분 (20)	추가 제안 (10)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추가 진행 계획 제안 등
	기타 사항 (10)	· 참여 EMR 제품의 EMR 인증제 인증획득 · 우리원 발전방안 등 의견 제시 · 위 사항들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
합계	**100**	**종합평가점수(40) : 합계 x 40%(사업제안서 평가 비율)**

○ **(3단계, 사업계획·사업비 심의 조정)**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 선정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협의 후 수행 계획을 확정

- 공고문 상의 협조의무 등 지원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예비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컨소시엄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컨소시엄과 과제조정을 진행함

○ **(4단계, 계약체결 및 사업지원금 지급)**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선정된 컨소시엄은 당초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계약체결)**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컨소시엄 대표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 **(사업지원금 신청)** 사업지원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회 분할 신청 및 지급

  ※ 선금 및 중도금(70%), 완료보고서 제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잔금(30%) 지급 예정

3 종합병원급 컨소시엄 선정평가

○ **(평가기준)** 정량평가 60%(평가지표) 및 정성평가 40%(사업제안서 평가)의 합산점수(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컨소시엄 순으로 예산 한도 내 선정

○ **(평가 실시방안)**

○ **(평가 실시방안)**

① **(정량평가)** 공모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통해 평가

② **(정성평가)** 컨소시엄이 제출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

※ 정성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처리방안)**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량평가 순위가 높은 분야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1단계, 정량평가)** 아래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1단계 정량평가 실시하여, 공모선정 목표 2배수 내로 2단계 정성평가 대상 선정

<table>
<tr><th>순위</th><th>분야</th><th>배점</th><th>평가항목</th></tr>
<tr><td>1</td><td>EMR 제품
기능 수준</td><td>30</td><td>· EMR 제품의 인증제 기능성 필수기준(51개) 대상 기능 충족도에 따라 점수 부여
<table><tr><th>항목</th><th>점수</th></tr><tr><td>31개(60%) 이상 충족</td><td>30</td></tr><tr><td>30개</td><td>28</td></tr><tr><td colspan="2">…
(인증기준 1개당 2점씩 차등)</td></tr><tr><td>17개</td><td>2</td></tr><tr><td>16개 이하</td><td>0</td></tr></table>※ 제안 EMR제품의 인증제 필수기준의 자가점검 증빙자료 제출 필수</td></tr>
<tr><td>2</td><td>진료기록요약지(CRS)
생성 목표</td><td>25</td><td>· 컨소시엄 내 진료기록요약지 기본 목표 대비 추가 생성 비율</td></tr>
</table>

<table>
<tr><th>순위</th><th>분야</th><th>배점</th><th>평가항목</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h>추가 생성 비율</th><th>점수</th></tr>
<tr><td>50%초과</td><td>25</td></tr>
<tr><td>40%초과 ~ 50%이하</td><td>21</td></tr>
<tr><td>30%초과 ~ 40%이하</td><td>17</td></tr>
<tr><td>20%초과 ~ 30%이하</td><td>13</td></tr>
<tr><td>10%초과 ~ 20%이하</td><td>9</td></tr>
<tr><td>10%이하</td><td>5</td></tr>
</table>
※ 사업제안서 내 구체적인 생성 계획, 시나리오, 시점, 목표, 목표 미달 시 조치 방안 등 제시
※ 기본 목표 : 36,750건 이상
</td></tr>
<tr><td>3</td><td>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생성 목표</td><td>20</td><td>· 컨소시엄 내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기본 목표 대비 추가 생성 비율
<table>
<tr><th>추가 생성 비율</th><th>점수</th></tr>
<tr><td>50%초과</td><td>20</td></tr>
<tr><td>40%초과 ~ 50%이하</td><td>17</td></tr>
<tr><td>30%초과 ~ 40%이하</td><td>14</td></tr>
<tr><td>20%초과 ~ 30%이하</td><td>11</td></tr>
<tr><td>10%초과 ~ 20%이하</td><td>8</td></tr>
<tr><td>10%이하</td><td>5</td></tr>
</table>
※ 사업제안서 내 구체적인 생성 계획, 시나리오, 시점, 목표, 목표 미달 시 조치 방안 등 제시
※ 기본 목표 : 36,750건 이상
</td></tr>
<tr><td>4</td><td>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 개소 수</td><td>10</td><td>· 컨소시엄 참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개소 수
<table>
<tr><th>항목</th><th>점수</th></tr>
<tr><td>8개소</td><td>10</td></tr>
<tr><td>7개소</td><td>8</td></tr>
<tr><td>6개소</td><td>6</td></tr>
<tr><td>5개소</td><td>4</td></tr>
</table>
※ 사업제안서 내 구체적인 확산 계획*, 목표, 목표 미달 시 조치 방안 등 제시
* (확산 계획 예시) 참여 의료기관에 서명이 포함된 참여 동의서 제출 등
</td></tr>
<tr><td>5</td><td>신규인력 채용
계획</td><td>10</td><td>· 본 사업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 예정인 인원 수
<table>
<tr><th>항목</th><th>점수</th></tr>
<tr><td>3명 이상</td><td>10</td></tr>
<tr><td>2명</td><td>6</td></tr>
<tr><td>1명</td><td>3</td></tr>
</table>
※ 사업제안서 내 구체적인 채용 계획, 시점, 목표, 목표 미달 시 조치 방안 등 제시
</td></tr>
<tr><td>6</td><td>진료정보교류 참여
EMR 제품 여부</td><td>5</td><td>· 컨소시엄 내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 개소 수
<table>
<tr><th>항목</th><th>점수</th></tr>
<tr><td>5개소 이상</td><td>5</td></tr>
<tr><td>4개소</td><td>4</td></tr>
<tr><td>3개소</td><td>3</td></tr>
<tr><td>2개소</td><td>2</td></tr>
<tr><td>1개소</td><td>1</td></tr>
</table>
※ 컨소시엄 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동일 EMR 제품명이 포함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적합성 검증 결과 공문 제출
</td></tr>
<tr><td colspan="2">합계</td><td>100</td><td>종합평가점수(60) : 합계 x 60%(평가지표 비율)</td></tr>
</table>

※ 순위 항목은 동일 순위 시 같은 점수 부여하고, 다음 순위는 동일 순위 수만큼 건너뛰고 점수 부여

○ **(2단계, 정성평가)** 사업제안서를 활용하여 정성평가 실시

- **(제안발표)** 사업제안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내외로 실시
- **(참석자)** 제안사별 사업설명 발표자* 외에 3인 이내 배석 가능

* 참여 컨소시엄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

- **(정성평가 항목)**

평가 부문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일반 부분 (20)	사업 참여 개요 (10)	· 참여 동기 및 배경 · 사업 참여 목적 · 컨소시엄 소개, 구성, 특징 및 장점
	사업 이해도 (10)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 · 사업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사업 수행 부분 (60)	사업 추진 전략 (15)	· 사업 추진 전략 · 사업 예산집행 계획 ·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협의체 운영 (10)	· 사업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CDS 연계 계획 (10)	· 임상의사결정지원(CDS) 연계 계획의 적합성 ※ (예시1) 컨소시엄 내 의료기관 전체 연계 등 ※ (예시2) 컨소시엄 내 의료기관의 내과계만 연계 등
	진료기록요약지(CRS) 생성 계획 (10)	· 진료기록요약지(CRS) 생성 목표, 시나리오, 전략, 시점 등 계획의 적합성 ※ 기본 목표 : 36,750건 이상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생성 및 활용 계획 (10)	·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생성 목표, 시나리오, 전략, 시점 등 계획의 적합성 ※ 기본 목표 : 36,750건 이상 ·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환자별 조회 기능 구현 계획
	신규 인력 채용 (5)	·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 · 채용 계획 미달 시 조치 방안
기타 부분 (20)	추가 제안 (10)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추가 진행 계획 제안 등 ※ (예시) 환자에게 전자문서로 된 의료데이터를 별도의 제품(PHR, 포털 등)을 활용하여 제공 실증 등
	기타 사항 (10)	· 참여 EMR 제품의 EMR 인증제 인증획득 · 우리원 발전방안 등 의견 제시 · 위 사항들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
합계	**100**	**종합평가점수(40) : 합계 x 40%(사업제안서 평가 비율)**

○ **(3단계, 사업계획·사업비 심의 조정)**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 선정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협의 후 수행 계획을 확정

- 공고문 상의 협조의무 등 지원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예비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컨소시엄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컨소시엄과 과제조정을 진행함

○ **(4단계, 계약체결 및 사업지원금 지급)**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선정된 컨소시엄은 당초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계약체결)**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컨소시엄 대표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 **(사업지원금 신청)** 사업지원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회 분할 신청 및 지급

  ※ 선금 및 중도금(70%), 완료보고서 제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잔금(30%) 지급 예정

Ⅵ 사업과제 수행관리

□ 수행내역 관리

○ **(수시점검)** 일상적인 수행보고는 수시로 진행

○ **(매월점검)** 월별 집행사항 점검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마다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

※ 사업 책임자가 직접 집행사항 보고하는 것을 원칙

※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비대면 보고 가능

□ 보고서 제출

○ 월간보고자료(월간보고, 사업비 집행내역 등)

○ 회의록(종합병원급 컨소시엄 내 협의체 회의록)

○ 발표자료(완료보고회 등)

○ 중간보고('21년 1월 예정)

○ 산출물,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 결과보고서('21년 4월)

□ 기타사항

○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수행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기한내(~'21.4월) 제출**하여야 함

Ⅵ 사업비 관리

□ 사업비의 관리

○ (사업비 관리운영)

- 사업비(사업지원비)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영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통보
-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사업추진과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분 불인정 및 환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는 각 사업비 집행건에 대한 증빙서류 등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비는 계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근거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 (사업비 정산)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 사용 잔액과 불인정금액은 해당 금액 환수 조치 가능
-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해당 건별 증빙자료 제출이 원칙이며, 사업비 관리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

Ⅶ 세부사항 문의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인증사업부	부장	송승용	02-6263-8354
	과장	김창대	02-6263-8357
	대리	박양지	02-6263-8350
e-mail : emrstandard@k-his.or.kr			

- 질문사항은 서류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원급 컨소시엄당 산출 내역**

□ 산출 내역 (5개 컨소시엄, 컨소시엄당 의원 600개소)

○ **(의원급 EMR 제품 개선)** 컨소시엄당 EMR 제품 개선비 220백만원

○ **(의원급 전자서명 사용료 지원)** 의원당 40만원

비용의 정산

- 의원 확산 개소 수 만큼 지원금 지급
  - [확산 의원 개소 수 x 40만원] 금액만 지급
    ※ (예시) 800개소 x 40만원 = 320,000천원

붙임2 병원급 컨소시엄당 산출 내역

□ 산출 내역 (3개 컨소시엄, 컨소시엄당 병원 10개소)

○ **(병원급 EMR 제품 개선)** 컨소시엄당 EMR 제품 개선비 280백만원

○ **(병원급 의료데이터 생성 실증)** 병원당 10백만원

분류	금액	산출내역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실증	9,975,000	3,500원(건당) x 3개월 x 950건(매달)
합계금액	**9,975,000**	

비용의 정산

- 컨소시엄 내 의료데이터 생성 지원비에서 생성 실증 목표대비 생성 비율을 아래 단계표를 통해 정산 비율로 환산하여 정산

< 단계표 >

목표대비 생성 비율	정산 비율
0%	0%
0%초과~10%이하	10%
10%초과~20%이하	20%
20%초과~30%이하	30%
30%초과~40%이하	40%
40%초과~50%이하	50%

목표대비 생성 비율	정산 비율
50%초과~60%이하	60%
60%초과~70%이하	70%
70%초과~80%이하	80%
80%초과~90%이하	90%
90%초과~100%이하	100%

- [컨소시엄 생성 지원비 × 정산 비율] 금액만 지급

※ (예시) 100백만원 x 90%(실 생성 비율 80.25%) = 90백만원

붙임3 종합병원급 컨소시엄당 산출 내역

□ 산출 내역 (2개 컨소시엄, 컨소시엄당 병원 5개소)

○ **(종합병원급 EMR 제품 개선)** 컨소시엄당 EMR 제품 개선비 550백만원

○ **(종합병원급 의료데이터 생성 및 상호운용성 실증)** 종합병원당 60백만원

분류	금액	산출내역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실증	25,725,000	3,500원(건당) x 3개월 x 2,450건(매달)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생성 실증	33,810,000	4,600원(건당) x 3개월 x 2,450건(매달)
합계금액	59,535,000	

비용의 정산

- 컨소시엄 내 의료데이터 생성 지원비에서 생성 실증 목표대비 생성 비율을 아래 단계표를 통해 정산 비율로 환산하여 정산

< 단계표 >

목표대비 생성 비율	정산 비율
0%	0%
0%초과~10%이하	10%
10%초과~20%이하	20%
20%초과~30%이하	30%
30%초과~40%이하	40%
40%초과~50%이하	50%

목표대비 생성 비율	정산 비율
50%초과~60%이하	60%
60%초과~70%이하	70%
70%초과~80%이하	80%
80%초과~90%이하	90%
90%초과~100%이하	100%

- [컨소시엄 생성 지원비 × 정산 비율] 금액만 지급

※ (예시) 300백만원 x 90%(실 생성 비율 80.25%) = 270백만원

붙임4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사업개요**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개요

○ **(목적)** EMR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계의 표준제품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

○ **(법적근거)**

- 의료법 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6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7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 **(인증기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① **기능성(62개)** : 의무기록 생성·저장·관리 등의 **1)법적 요건, 2)기본 기능, 3)환자 안전**으로 구성
* **의료기관 규모**(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에 따라 기능성 인증 **개수 차등 적용**

② **상호운용성(10개) :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우선 적용 및 표준(용어·서식·기술) 마련 후 기능성 연계

③ **보안성(14개) :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P) 및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인증제 우선 적용 후 인증기준 확대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자(업체)에 대해 **제품인증**, 사용자(의료기관 등)에 대해 **사용인증**을 각각* 실시
* 단, 자체 개발 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함께 실시

○ **(인증주기)** 인증 유효기간 **3년** 이후 재인증 필요
* 인증 후 인증기준 변경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인증 유효

○ **(인증결과)** 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인증절차)** 신청 → 현장평가 → 결과통보 → 갱신

○ **(인증제 도입)** 시범사업 수행('18.8 ~ '19.12), 인증제 고시 제정 및 제도 시행('20.6)

붙임5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인증기준표**

□ 기능성 (62개)

대분류	중분류	번호	인증기준	유형1	유형2	유형3
1. 환자정보관리	1.1 환자기본정보생성	F001	등록번호 및 인적사항 관리	필수	필수	필수
1. 환자정보관리	1.1 환자기본정보생성	F002	진료예약 일정관리	필수	필수	필수
1. 환자정보관리	1.2 환자정보관리	F003	인적사항 수정 이력 관리	필수	필수	필수
1. 환자정보관리	1.2 환자정보관리	F004	동명이인 구분자 표시	필수	필수	필수
1. 환자정보관리	1.2 환자정보관리	F005	다중 등록번호 통합관리	필수	필수	필수
1. 환자정보관리	1.2 환자정보관리	F006	식별정보를 이용한 환자 검색	필수	필수	필수
1. 환자정보관리	1.2 환자정보관리	F007	진료 구분에 따른 환자 검색	선택	필수	필수
1. 환자정보관리	1.3 동의서/의향서 관리	F008	수술시술 동의서 기록 · 조회	필수	필수	필수
1. 환자정보관리	1.3 동의서/의향서 관리	F009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록 · 조회	선택	필수	필수
1. 환자정보관리	1.3 동의서/의향서 관리	F010	연명의료결정 정보 표시	선택	선택	선택
1. 환자정보관리	1.4 외부정보관리	F011	외부 의료기관 문서 등록 · 조회	필수	필수	필수
1. 환자정보관리	1.4 외부정보관리	F012	외부 검사결과 등록 · 조회	필수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1 약품정보관리	F013	약품마스터 관리 및 약품명 조회	필수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1 약품정보관리	F014	약품 정보 조회	필수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2 약물처방	F015	투약 처방 기록 · 수정 · 조회	필수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2 약물처방	F016	투약 처방 시 속성 지정	선택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3 약물처방관리	F017	수진 정보 변화 후 이전 투약 처방 참조	선택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3 약물처방관리	F018	투약 처방 시 검사 결과 조회	필수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3 약물처방관리	F019	마약류 투약 처방 중단 시 반납 사유 기록 · 조회	선택	선택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F020	약물명 오입력 방지	선택	선택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F021	부적절한 투여 경로 경고	선택	선택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F022	체중 기반 약물 투여량 처방	선택	선택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F023	소아 및 항암제 약물 투여량 계산	선택	선택	선택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F024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정보 표시	선택	선택	선택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F025	약물 상호작용 및 약물 알레르기 점검 · 경고	필수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F026	특정 진료과 승인이 필요	선택	선택	필수

대분류	중분류	번호	인증기준	유형1	유형2	유형3
			한 투약 처방 알림			
2. 처방정보관리	2.5 약물처방수행	F027	투약 처방 조회	선택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5 약물처방수행	F028	특정 약물 투약 환자 조회	선택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5 약물처방수행	F029	약물 투여 시 투여 속도 계산	선택	선택	선택
2. 처방정보관리	2.5 약물처방수행	F030	투약 처방 수행 기록 · 수정 · 조회	선택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5 약물처방수행	F031	바코드 또는 RFID를 이용한 안전한 투약	선택	선택	선택
2. 처방정보관리	2.6 약물외 처방	F032	검사 처방 기록 · 수정 · 조회	필수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6 약물외 처방	F033	검사 및 처치 처방 시 참조 정보 입력 · 조회	선택	선택	선택
2. 처방정보관리	2.6 약물외 처방	F034	식이 처방	선택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6 약물외 처방	F035	기타 처방 기록 · 수정 · 조회	필수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6 약물외 처방	F036	미래 처방 기록 · 조회	선택	필수	필수
2. 처방정보관리	2.6 약물외 처방	F037	세트(약속) 처방 관리	필수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1 의무기록관리	F038	의무기록 수정이력 관리	필수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1 의무기록관리	F039	의무기록 서식 관리	선택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1 의무기록관리	F040	의무기록 동반 서명	선택	선택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2 의무기록작성	F041	의무기록 기록 · 수정 · 조회	필수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2 의무기록작성	F042	병력 기록 · 수정 · 조회	필수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2 의무기록작성	F043	가족력 기록 · 수정 · 조회	필수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2 의무기록작성	F044	타과의뢰 기록 · 수정 · 조회	선택	선택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2 의무기록작성	F045	사망원인 기록 · 수정 · 조회	선택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3 환자임상정보	F046	진단명 기록 · 수정 · 조회	필수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3 환자임상정보	F047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정보 기록 · 수정 · 조회	선택	선택	선택
3. 의무기록관리	3.3 환자임상정보	F048	약물 목록 조회	필수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4 임상측정관리	F049	활력징후 기록 · 수정 · 조회	필수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4 임상측정관리	F050	신체계측 기록 및 BMI 계산	필수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5 검사결과관리	F051	검사결과 조회	필수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5 검사결과관리	F052	검사결과 추이 조회	선택	필수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5 검사결과관리	F053	영상 검사결과 영상 이미지 연결	선택	선택	필수
3. 의무기록관리	3.5 검사결과관리	F054	중요 검사결과 알림	선택	선택	필수
4.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4.1 공공정보연계	F055	예방접종 정보 등록	필수	필수	필수
4.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4.1 공공정보연계	F056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입력	필수	필수	필수

대분류	중분류	번호	인증기준	유형1	유형2	유형3
4.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4.1 공공정보연계	F057	감염병 의심정보 표시	필수	필수	필수
4.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4.1 공공정보연계	F058	감염병 의심정보 생성 · 조회	선택	선택	선택
4.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4.2 환자정보제공	F059	법정서식 제공	필수	필수	필수
4.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4.2 환자정보제공	F060	의무기록 제공	필수	필수	필수
4.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4.2 환자정보제공	F061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선택	선택	선택
4.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4.2 환자정보제공	F062	환자 건강관리 정보 알림	선택	선택	선택

□ 상호운용성 (10개)

대분류	중분류	번호	인증기준	유형1	유형2	유형3
5. 상호운용성	5.1 교류 환자동의	I001	진료정보교류 환자 동의(철회)서 생성	선택	선택	선택
5. 상호운용성	5.2 교류 식별체계	I002	주민등록번호 대체용 환자식별정보(MPI) 생성	선택	선택	선택
5. 상호운용성	5.3 교류 진료정보	I003	진료의뢰 정보 생성 · 조회	선택	선택	선택
5. 상호운용성	5.3 교류 진료정보	I004	진료회송 정보 생성 · 조회	선택	선택	선택
5. 상호운용성	5.3 교류 진료정보	I005	진료기록요약 정보 생성 · 조회	선택	선택	선택
5. 상호운용성	5.3 교류 진료정보	I006	판독소견 정보 생성 · 조회	선택	선택	선택
5. 상호운용성	5.4 교류 영상정보	I007	영상정보 전송 · 조회	선택	선택	선택
5. 상호운용성	5.5 교류 전송 및 확인	I008	교류시스템 간 연결 인증을 통한 정보 교환	선택	선택	선택
5. 상호운용성	5.5 교류 전송 및 확인	I009	교류정보에 대한 의뢰 및 상태 알림	선택	선택	선택
5. 상호운용성	5.6 교류 보안	I010	감사로그(ATNA) 생성	선택	선택	선택

□ 보안성 (14개)

대분류	중분류	번호	인증기준	유형1	유형2	유형3
6. 보안성	6.1 계정관리	S001	계정 관리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1 계정관리	S002	비밀번호 관리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2 접근권한	S003	권한 관리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2 접근권한	S004	권한 이력 관리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2 접근권한	S005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2 접근권한	S006	세션 종료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3 감사	S007	감사기록 생성 및 관리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3 감사	S008	시간 동기화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4 비식별 조치	S009	고유식별정보 마스킹 표시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5 암호화	S010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저장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5 암호화	S011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저장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6 전자인증	S012	전자서명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7 백업 및 복구	S013	백업	필수	필수	필수
6. 보안성	6.8 외부보관	S014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보안 인증	필수	필수	필수

붙임6 상세 비목별 편성 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내역</th></tr>
<tr><td rowspan="2">인건비</td><td>보수</td><td>▪ 사업수행 참여·지원 인력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
(보수인정 항목* × 참여율)</td><td rowspan="2">▪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 보수인정항목 : 급여(수당포함), 급여성복리후생비, 4대보험,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td></tr>
<tr><td>상용임금</td><td>▪ 사업수행 참여·지원 인력에 대한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건비
(보수인정 항목* × 참여율)</td></tr>
<tr><td rowspan="7">일반
수용비</td><td>사무용품
구입비</td><td colspan="2">▪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td></tr>
<tr><td>인쇄
홍보비</td><td colspan="2">▪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td></tr>
<tr><td>수수료</td><td colspan="2">▪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td></tr>
<tr><td>임차료</td><td colspan="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td></tr>
<tr><td>회의수당</td><td colspan="2">▪ 사업추진과 관련한 회의 추진과 관련한 회의 참석비
* 기관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
▪ 지급기준 : 100,000원 … 참석 2시간 미만
* 참석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해 5만원 추가 지급 가능</td></tr>
<tr><td>자문수당</td><td colspan="2">▪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자문
▪ 지급기준 : 2시간 이하 20만원, 3시간 이하 30만원, 3시간 초과 40만원</td></tr>
<tr><td>식사, 다과비
등</td><td colspan="2">▪ 식대 및 기타 비용 등 (1인당 3만원 한도)</td></tr>
<tr><td colspan="2">공공요금 및 제세</td><td colspan="2">▪ 사무공간 등에 대한 냉난방비, 통신비 등 공공요금 비용</td></tr>
<tr><td colspan="2">특근매식비</td><td colspan="2">▪ 인력에 대한 특근매식비 1식당 6,000원</td></tr>
<tr><td colspan="2">일반용역비</td><td colspan="2">▪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하도급 업체 인건비 지급은 불가</td></tr>
<tr><td colspan="2">국내여비</td><td colspan="2">▪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td></tr>
<tr><td colspan="2">자산취득비</td><td colspan="2">▪ 집행 불가</td></tr>
<tr><td colspan="2">기타운영비</td><td colspan="2">▪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협의 후 사용 가능</td></tr>
</table>

※ 비목별 총괄표에 명시된 기준 외에 새로운 항목 신설 불가

붙임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중략 …>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0. 3. 4.>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중략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신설 2020. 3. 4.>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 이후생략 …>